의 안 번 호	1729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30.(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4. 30.(금)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5. 13.(목)

2. 제안설명 요지(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회계법」등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문장을 정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관련 조항 명시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 개정

- 물품 관리 책임공무원 지정(안 제2조)
-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 결정(안 제17조)
- 물품 검사 및 검수자 지정(안 제28조, 제29조)
- 불용품 매각 관련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 변경(안 제18조)

❍ 조항 신설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3조)
-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 신설(안 제35조)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품종 구분 기준 변경(안 제6조의 별표1)

- 비품 :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물품 →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물품
- 소모품 : 취득단가 10만원 이하 물품 → 취득단가 50만원 미만 물품

❍ 「지방회계법」에 따라 용어 정비

-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9조)
-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변경(안 제11조)

❍ 기증품의 취득시 심의기관을 “울산광역시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안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및 문장 등 정비 (안 제1조 ~ 제34조)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회계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미경)

❍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지방회계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게 일부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형식에 맞지 않는 용어 표현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절차상 하자나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공유재산 및 물품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 ③항 생략

④ 일상경비등의 범위와 지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 · 재무관 · 재산관리관 · 물품관리관 · 채권관리관 · 부채관리관 ·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 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① ~ ②항 생략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경우 시 · 도지사,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 도의 경우 행정부시장 · 행정부지사,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 · 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 · 도 및 시 · 군 ·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